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 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 요건은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 삭제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조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라.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10.20.~11.9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해방지) 성주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	<삭 제>

친환경 행복농촌, Clean 성주와 함께해요!

성 주 군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관련 검토의견 제출

1.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- 1751(2015.12.30.)호 및 도 혁신법무담당관 - 7569(2016.8.30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과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, 해당 실과소단에서는 검토 후 수용할 경우는 이행계획을, 불수용할 경우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'16. 9. 7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과제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참고

붙임 1.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 과제 1부.
2.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1부. 끝.

성 주 군 수

수신자 실과소단